

의안번호	2200390
의 퇴 인	박대출 의원
회 답 일	2024.7.19.
추 계 번 호	24E07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5년 28억원, 2029년 934억원 등 2025~2029년 5년간 총 1,953억원(연평균 3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안 제91조의18)	-28	-28	-28	-934	-934	-1,953	-391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기존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 납입한도: 1억원(연 2천만원) → 2억원(연 4천만원) - 비과세한도: 200만원 → 500만원 서민·농어민 400만원 → 1천만원 ○ 국내투자형 ISA 신설 - 가입대상: 일반 ISA와 동일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포함 -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국내주식에 일정 비율(시행령) 투자) 한정 -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 비과세한도: 1천만원, 서민·농어민 2천만원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 일반투자형 ISA에 대하여 납입한도·비과세한도 상향조정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고 국내투자형 ISA 신설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여 합산

[표 2] 개정안에 따른 주요 변동내용

	일반투자형 ISA	국내투자형 ISA 신설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포함)
운용자산	-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금융상품 - 집합투자증권 -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상장형수익증권 -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 등	- 국내 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내 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 등
납입한도	1억원(연 2천만원)→2억원(연 4천만원)	2억원(연 4천만원)
비과세한도 및 세율	(한도) 일반 200만원→500만원 서민·농어민 400만원→1천만원 (세율) 비과세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한도) 일반 1천만원 서민·농어민 2천만원 (세율) 비과세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주: 굵은 글씨가 개정안의 내용임

- (일반투자형) 최근 ISA 이자·배당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개정안에 따라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상향조정할 경우 추가적인 세수 감소를 추계
 - 비과세한도 상향 시 적용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ISA 소득액 구간별로 구분된 2021~2022년 이자·배당소득세액 자료(국세청)를 활용
 - 2021년 신설된 투자중개형 ISA(주식 운용 가능) 자료는 의무가입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의 소득세 신고자료임을 감안할 필요¹⁾
 - 납입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납입액 수준은 한도 인상률(2배)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추정
- (국내투자형) 대상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중 일부로 하고, ISA를 통해 투자하는 국내 상장주식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
 - 배당소득 분리과세(14%) 대상자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중 현재 과표 대비 산출세액의 비율(실효세율)이 14% 이하인 자의 ISA 가입, 기존 ISA 가입자의 계좌 이동은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제
 - 투자 성향 변화에 따른 신규 ISA 가입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반영하지 않음
 - 배당소득의 원천인 ISA 운용자산은 매년 한도 금액(연 4천만원)만큼 납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배당소득금액은 운용자산 금액에 평균 시가배당률²⁾을 적용해 추정함
 - 연도별 ISA 가입률 및 납입액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납입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함
- ISA 과세특례 적용은 의무가입 요건(3년)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동 추계에서는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하고 손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전제
 - 가입자가 5년간 납입한도의 최대 수준까지 투자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의무가입 기간(3년) 이후 만기 시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유지 기

1) ISA 조세지출 실적은 다음과 같음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조세지출액(억원)	0.46	1	8	24	138	54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 시가배당률은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누어 산출

간 및 소득실현 시점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전체 ISA 계좌 수, 납입액 규모 및 배당률은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2025년부터는 기존 이자·배당소득 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ISA 과세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나,³⁾ 현 시점에서는 금융투자소득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해당 소득에 대한 세수 효과는 추계에 포함하지 않음

□ 이 법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의 부칙을 감안하여 법률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

-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상향은 이 법의 시행 전에 가입한 계좌에도 적용
- 국내투자형 ISA 신설은 이 법의 시행 이후 가능하므로, 세수효과가 만기(3년) 후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일반투자형 ISA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에 대한 세수효과

□ (추계방법)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 전환 대상이 되는 ISA 소득액 구간별 소득세액 자료(국세청)을 활용해 세수효과를 추정

- 현재 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소득액 구간(일반계좌 200~500만원, 서민·농어민계좌 400~1,000만원)이 비과세 전환 대상 구간임

□ (자료) 서민·농어민 계좌 유형에 따라 비과세 전환 대상 구간이 다르나, ISA 소득세액 자료로는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별도의 납입금액 자료(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산출한 계좌 유형별 비율을 적용해 구분함

- 소득액 자료는 2021~2022년 평균 실적을 산출하여 활용
 - － 소득세액 중에는 의무가입 기간 전 해지로 인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한 금액 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 구분이 어려워 모두 반영함

3) 법률 제18634호

[표 3] ISA의 연도별 이자·배당소득세액(원천징수, 귀속 기준)

(단위: 억원)

소득액 구간	2021년	2022년	2021~2022년 평균
200~400만원	9.0	2.0	5.5
400~500만원	7.3	1.5	4.4
500~1,000만원	28.9	4.6	16.8

주: 1.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자료를 집계

2. 동 자료에는 9% 외 다른 세율(만기 전 해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등)도 일부 포함됨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소득세액 자료는 계좌 유형(일반 또는 서민·농어민)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납입금액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계좌유형 비율을 적용해 구분함
 - －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2022년 평균 일반계좌 비중은 63.0%, 서민·농어민계좌 비중은 37.0%

[표 4] ISA 가입유형별 납입금액 현황(각 연도 말일 기준)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1~2022년 평균	
	일반	서민·농어민	일반	서민·농어민	일반	서민·농어민
납입금액	10.1	2.8	8.9	9.7	9.5	6.3
(비중)	(78.2)	(21.8)	(47.7)	(52.3)	(63.0)	(37.0)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ISA 비과세한도 상향조정 시 예상되는 연간 감면세액은 14 억원이며, 납입한도 2배 인상을 감안한 전체 감면세액은 28억원 수준으로 추정

- 비과세한도 상향 시 일반계좌(200→500만원)의 감면세액은 6.2억원, 서민·농어민계좌(400→1,000만원)의 감면세액은 7.8억원으로 추정
- 납입한도 상향 조정의 경우 추가적인 가입성향 등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납입한도 2배 인상에 따라 감면세액도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함

[표 5] ISA 비과세소득 구간 확대 시 추가 감면세액 규모 추정

(단위: 억원)

계좌 유형별	ISA 소득액 구간별			합계	
	200~400만원	400~500만원	500~1,000만원	계좌유형별	전체
일반 ¹⁾	3.5	2.8	-	6.2	14.0
서민·농어민 ¹⁾	-	1.6	6.2	7.8	

주: 1) 계좌유형별 소득세액은 전체 소득세액에 일반형 63.0% 및 서민·농어민형 37.0%를 적용해 산출함

- (세수효과) ISA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상향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5년 28억원 등 2025~2029년 5년간 총 140억원(연평균 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6] 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상향조정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세수효과	-28	-28	-28	-28	-28	-140	-28

나. 국내투자형 ISA 신설에 대한 세수효과

- (추계방법) 국내투자형 ISA 가입 유인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인원 및 배당소득을 추정하고, ISA 가입에 따른 세율변화를 반영
- 현행 종합소득세 적용 시 실효세율과 국내투자형 ISA 가입 시 세율(14%)을 비교해 감면의 효과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배당소득 원천인 ISA 운용자산이 매년 납입한도 금액(4천만원) 수준일 것으로 전제
- (가입자 수) ISA 가입 인원은 2022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중에서 배당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경우 세율 인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1.2만명으로 산출
- 2022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평균 실효세율(=1인당 평균 산출세액/과세표준 금액) 기준으로, 소득 8천만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이 14%를 상회함
 -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소한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15~45%)을 적용함⁴⁾
 - 실효세율이 14%를 상회하는 경우 ISA 가입에 따른 세율 감면의 효과가 발생

[표 7]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실효세율 및 개정안에 따른 세율 변화: 2022년 귀속

(단위: 만원, %)

종합소득금액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개정안의 ISA	세율 차이 E=D-C
	1인당 평균 과세표준 금액	1인당 평균 산출세액	실효세율	국내투자형 ISA 세율	
	A	B	C=B/A	D	
3~5천만원	3,544	483	13.6	14.0	0.4
5~6천만원	4,919	653	13.3		0.7
6~7천만원	5,829	783	13.4		0.6
7~8천만원	6,721	932	13.9		0.1
8~9천만원	7,584	1,126	14.8		-0.8
9천만원~1억원	8,507	1,343	15.8		-1.8
1~2억원	13,008	2,692	20.7		-6.7
2~3억원	22,744	6,234	27.4		-13.4
3~5억원	36,295	11,480	31.6		-17.6
5억 원 초과	164,995	67,726	41.0		-27.0

주: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구간은 평균적으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내·외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 등)이거나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부터 산출되는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로 보고 포함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배당소득을 가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중에서 소득 8천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11.2만명이 ISA 가입 시 감면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제

- 4)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의 세율이 분리과세 세율(14%)보다 낮지 않도록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과세 시 한계 명목세율이 14%보다 낮은 경우라도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14%의 세율을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소득세법」 제62조) :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①, ②)

① 일반 산출세액 = (과세표준 금액 - 2천만원) × 종합소득세율 + 2천만원 × 세율 14%

② 비교 산출세액 = (과세표준 금액 - 금융소득금액) × 종합소득세율
+ 금융소득금액 × 세율 14%(비영업이익의 경우 25%)

[표 8] 배당소득¹⁾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신고 현황: 2022년 귀속

(단위: 명, 만원)

종합소득금액	인원	1인당 평균 배당소득금액
	F	G
8~9천만원	7,024	3,094
9천만원~1억원	6,725	3,242
1~2억원	44,944	4,332
2~3억원	19,017	7,171
3~5억원	15,465	11,408
5억 원 초과	19,498	74,723
합계	112,673	—

주: 1) 국내상장법인 주식·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납입금액)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평균 배당소득 금액을 참고하여, ISA 납입하는 금액을 1인당 연간 4천만원으로 전제

- 2022년 기준 소득 8천만원 초과 구간별 1인당 평균 배당소득금액은 3,094만원~7억 4,723만원
 - 1인당 평균 배당소득금액에 2022년 유가증권 평균 시가배당률(2.7%)을 적용하여 환산한 1인당 금융자산 규모는 11.5억원~276.8억원 수준
- 해당 구간의 1인당 금융자산 규모를 감안할 때, 대상자가 모두 연간 4천만원의 ISA 납입 여력을 가진 것으로 전제하여 반영함

□ (소득금액) 만기 전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연도별 배당소득금액이 다음 연도의 운용금액에 재투자되는 것을 가정하여 국내투자형 ISA 가입 후 3년간 누적 배당소득금액이 66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제

- 연간 배당소득금액은 연간 운용금액에 시가배당률(2.7%)⁵⁾을 곱하여 산출

5) 2022년 시장별 배당실적은 유가증권 26.6조원(보통주 평균 시가배당률 2.7%), 코스닥증권 2.2조원(평균 시가배당률 1.9%)였으므로, 배당규모 등을 감안해 유가증권의 배당률을 반영하였음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유가증권시장 현금배당 법인의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및 주가등락률 현황”, 2023.4.20. 등)

[표 9] 3년 간 국내투자형 ISA에 연 4천만원 납입할 경우 배당소득금액 규모 추정
(단위: 만원)

	가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누적 / 합계액
운용금액 ¹⁾ (H)	4,000	8,108	12,327	12,327
배당소득금액 ²⁾ (J=H×배당률)	108	219	333	660

주: 1) 운용금액은 당해 납입금액(연 4천만원)과 전년도 납입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

2) 매년 배당소득금액은 운용금액에 평균 시가배당률(2.7%)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배당률이 매년 동일할 것으로 가정

1. 자산가격 상승 및 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

□ (연간 세수효과)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국내투자형 ISA에 3년간 매년 4천만원 씩 납입하는 경우, 만기(3년) 도래 후 세수가 9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세수 변화는 연도별·소득구간별로 ‘인원×1인당 배당소득금액×세율 차이(현행 실효세율 - 개정안의 ISA 세율)’을 산출해 합산

[표 10] 국내투자형 ISA 신설 시 추가 감면세액 규모 추정

(단위: 명, 만원, %, 억원)

종합소득 구간별	인원 (F)	1인당 배당소득금액 (J)			세율 차이 (E)	세수 변화 (K=F×J×E)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8~9천만원	7,024	108	219	333	-0.8	-1	-1	-2
9천만원~1억원	6,725	108	219	333	-1.8	-1	-3	-4
1~2억원	44,944	108	219	333	-6.7	-32	-66	-100
2~3억원	19,017	108	219	333	-13.4	-28	-56	-85
3~5억원	15,465	108	219	333	-17.6	-29	-60	-91
5억 원 초과	19,498	108	219	333	-27.0	-57	-115	-176
합계	112,673	-	-	-	-	-148	-301	-457
						(전체) -906		

□ (세수효과) 국내투자형 ISA 신설 시 소득세수는 2027년 906억원 등 2025~2029년 5년간 총 1,813억원(연평균 9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제도시행 후 만기(최소 3년)가 경과한 2028년 소득

신고분부터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제

[표 11] 국내투자형 ISA 신설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세수효과	-	-	-	-906	-906	-1,813	-906

다. 전체 세수효과

-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5년 28억원, 2029년 934억원 등 2025~2029년 5년간 총 1,953억원(연평균 3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상향	-28	-28	-28	-28	-28	-140	-28
국내투자형 ISA 신설	-	-	-	-906	-906	-1,813	-906
전체	-28	-28	-28	-934	-934	-1,953	-391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김효경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